

광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51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517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5508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변론종결 2022. 8. 19.

판결선고 2022. 9. 2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5508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은 52,72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2,72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그 중 78,594,0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제13행의 “증인”의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제3쪽, 제14, 15, 1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판사 김효진

별지